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I. 사업목적

본 센터는 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목욕 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II.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1. 명 칭 : 백세인생 재가복지센터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27, 유원골든타워 1028호

III. 이용정원과 대상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 정원
 - : 「노인복지법 제29조 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기반하여 본 기관은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
2. 이용 대상
 -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모집 방법
 -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센터 블로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홍보
 - ② 현수막, 전단지, 차량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홍보
 - ③ 지역 신문, 버스 또는 택시 등 교통수단 홍보 의뢰
 - ④ 지역사회 주요 정보제공자 접촉을 통한 홍보 전략 수집
 - ⑤ 센터 종사자의 개별 접촉, 이용자의 주변 권유 등
 - ⑥ 지자체 의뢰 적극 유인 (저소득 계층)

IV.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V. 계약기간

- ① 이용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② 센터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 ③ 법령에 의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장기요양 등급 변경, 계약기간 만료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VI.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당 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15%)	경감(9%)	경감(6%)
30분	17,450	2,618	1,571	1,047
60분	25,320	3,798	2,279	1,519
90분	34,120	5,118	3,071	2,047
120분	43,430	6,515	3,909	2,606
150분	50,640	7,596	4,558	3,038
180분	57,020	8,553	5,132	3,421
210분	63,530	9,530	5,718	3,812
240분	70,080	10,512	6,307	4,205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행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제시된 서비스 제공을 제외한 이용자의 추가적인 서비스 요구는 별 건의 계약으로 진행한다.

Ⅶ. 신원 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1.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 ④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⑥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③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④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 ⑥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Ⅷ. 계약의 해제

- ① 계약 종결은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지만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 i.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ii.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iii.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iv.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 상 문제자인 경우
 - v.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③ 센터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IX. 서비스의 내용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환복,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정서지원	말벗, 격려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등으로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